

작성 방법

1. 조정명세서상 명세란(②,③,④):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계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. 다만,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②란의 회계계상액에는 신고조정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합하여 적습니다.
2. 준비금 계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(※ 표시란): 최저한세조정계산서(별지 제4호서식)의 ④ 조정감란 중 ㉞의 금액을 옮겨 적고,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적습니다.
3. 각 준비금의 ⑤란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: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4.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(※ 표시란): 최저한세조정계산서(별지 제4호서식)상의 ④ 조정감란 중 ㉞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,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(정률법)[별지 제20호서식(1)]상의 ㉞란, 유형·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(정액법)[별지 제20호서식(2)]의 ㉞란에 적습니다.
5.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(※ 표시란): 최저한세조정계산서(별지 제4호서식)의 ④ 조정감란 중 ㉞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, 이를 (구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61조제1항제12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(정률법)[별지 제11호의3서식(1)]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61조제1항제10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(정률법)[별지 제9호의3서식(1)]의 ㉞란,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(정액법)[별지 제11호의3서식(2)]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(정액법)[별지 제9호의3서식(2)]의 ㉞란에 적습니다.
6.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 법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① 구분(「조세특례제한법」 근거 조항)란의 하단 여백에 해당 감면명칭과 구법 근거조항을 적고,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㉞란에 적습니다.